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97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22.

발 의 자 : 조승래 · 홍정민 · 김민석
박홍근 · 박영순 · 강병원
한준호 · 김진표 · 기동민
서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함)를 두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, 민간위원으로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 또는 정보통신관련 단체의 대표자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책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제한적이어서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,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등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, 심의위원회가 단순 심의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어 민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움.

또한,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·이용 촉진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,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정

책 관련 심의·의결을 하도록 하고,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,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등 다양한 사람이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(안 제5조, 제6조 및 제9조의2 신설).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”을 “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)”를 “(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심의하기”를 “심의·의결하기”로, “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(이하 “주소정책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주소정책위원회”로, “심의한다”를 “심의·의결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주소정책위원회”로, “10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주소정책위원회”로, “지명한다”를 “지명하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심의위원회”를 “주소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6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

1.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

-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2.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
 3.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
 4.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 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,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 6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한국인터넷정보센터)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·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(이하 “인터넷정보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· ② (생략)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<u>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</u> 거쳐야 한다. ④ (생략)</p> <p>제6조(<u>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</u>) 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 등을 <u>심의하기</u>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<u>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</u>를 둔다. ② <u>심의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한다</u>. 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 6. (생략) ③ <u>심의위원회</u>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	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u>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</u>의 <u>심의·의결을</u>----- --.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<u>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</u>) ① ----- ----<u>심의·의결하기</u>----- -----<u>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(이하 “주소정책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--. ② <u>주소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<u>심의·의결한다</u>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</u>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③ <u>주소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<u>20명</u>----- ----- -----.</p>

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.

1.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2. 판사·검사·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
3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

4.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
5.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

④ 주소정책위원회-----

-----지명하되, 다

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2. 대학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

3.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

4.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

있었던 자

6.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
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,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으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
6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⑤ 주소정책위원회-----

-----.

제9조의2(한국인터넷정보센터) ①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·이용 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(이하 “인터넷정보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인터넷정보센터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